선택적 복지제도 운영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능률 향상 도모		
사업비 (당해년도)	19,245,066천원	〔국비〕	〔시비〕19,245,066천원
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	〔기타〕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행정국	인력개발과	김희갑 2133-5750	김인겸 2133-5770	송근정 2133-5773

2 예 산 설 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19,102,566	(x-) 19,245,066	(x-) 142,500	(x-) 0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(x-) 19,102,566	(x-) 19,245,066	(x-) 142,500	(x-) 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○ 맞춤형복지제도	=	19,052,146천원
	- 개인자율포인트 1,100,000원*10,350명	=	11,385,000천원
	- 단체보험료	=	7,305,200천원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	700,000원*10,436명 - 실적가점 전환비용 42,186,000원	=	42,186천원
	- 다자녀 지원 233,000,000원	=	233,000천원
	- 실무수습 복지포인트 1,800,000원*0.5*241명*0.4	=	86,760천원
	○ 시의원 복지포인트 1,820,000원*106명	=	192,920천원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
○ 개인에게 부여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 수준을 향상

□ 사업근거

○ 법령상 근거
- 지방공무원법 제77조
- 서울특별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

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-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-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(표준안) (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-2016.10)

□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 : 본청 및 사업소 직원(청원경찰, 시간선택제, 실무수습 포함)

○ 사업내용 :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(1인 평균 1,800P)
- 기본항목 : 생명·상해보장보험,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
- 자율항목 :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,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, 공연관람, 국내외여행 등 20항목

○ '18년도 예산(안) : 19,245,066천원

□ 추진경위

○ '04. 6 선택적복지제도 도입
○ '05. 1 청원경찰 선택적복지 지급대상 확대
○ '07. 1 복지카드 도입
○ '12. 7 시간제 선택적복지 지급대상 확대
○ '13. 5 후생복지포털 도입

○ ’14. 1　　전통시장 상품권 의무구입(자율항목 10%)

□ 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9,245,066	
단체보험료 지급	2018.01~2018.01	7,305,200	18년 단체보험계약금 지급
선택적복지비용 지급	2018.01~2018.12	11,939,866	월별 선택적복지비용 환급

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확대 : 건강안마원(바우처기관) 이용비 추가 ○ 복지쿠폰 차감항목 확대 : 구내치과 이용비(재료비) 추가
2016년도	○ 가족친화(금요일 외식비), 국내외 여행비(블랙박스 구입) 등 복지항목 확대
2017년도	○ 시간제 공무원 전일제와 동일하게 포인트 지급 ○ 실무수습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확대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후생복지포털을 통한 예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후생복지 지원 정보를 공유하여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

○ 점진적인 복지항목 확대를 통하여 복지포인트 이용 활성화 및 직원 요구사항 반영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
2014	(x-) 16,965,102	(x-) 0	(x-) 200,000	(x-) 17,165,102	(x-) 17,146,177	(x-) 0	(x-) 18,925
2015	(x-) 17,274,836	(x-) 0	(x-) 150,000	(x-) 17,424,836	(x-) 17,420,900	(x-) 0	(x-) 3,936
2016	(x-) 18,183,206	(x-) 0	(x-) 0	(x-) 18,183,206	(x-) 17,859,468	(x-) 0	(x-) 323,738